

##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계획 공고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5.

부 산 광 역 시 장

### I | 공모 대상 사업

1. 공모대상 :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수행기관(1개)

2. 사업개요

가. 사업기간 : 2026. 3월 ~ 12월(10개월)

나. 사업인원 : 아동안전지킴이 302명(예정)

다. 사업내용

- 아동안전지킴이 인력풀 구성(302명 예정)
-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(활동비, 부대경비) 집행 및 정산관리
  - ▶ 16개 경찰서 지킴이 활동내역 취합, 매월 활동비 일괄 지급
  - ▶ 월별 활동 인원·활동비 집행 내역 입력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)
  - ▶ 물품 등 계약체결 및 회계처리

- 참여자 교육 및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성과 관리·홍보활동
- 기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관한 사항

라. 사 업 비 : 1,530,000천원 ▶ 활동비 1,479,000천원, 부대경비 51,000천원

## II 신청 자격

-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소(원)를 둔 기관·단체
 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 - 사회복지법인,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(사단·재단)
 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
- 다음 각 목의 항목을 모두 갖춘 단체
  -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, 사업 추진 전담 인력
-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감 및 봉사 정신이 강한 단체
  - 아동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봉사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단체
  -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

### ◆ 지원 제외 대상 ◆

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법령, 조례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전부 예규, 308호)」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-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는 단체(※아동안전지킴이 사업 특성 고려)

### III 신청 방법

#### 1. 신청방법

가. 접수기간 : 2026. 1. 5.(월) ~ 1. 20.(화), 18:00까지 <16일>

나. 접수방법 : 보탬e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) ※<https://www.losims.go.kr/sp>

다. 접수장소 : 보탬e 메인화면 '공모사업' 메뉴, 사업 검색 후 신청서 작성

- 보탬e를 통한 접수 시 회원가입 및 단체등록 필요
- 보탬e 사용 매뉴얼은 보탬e 메인화면의 '사용자 매뉴얼' 참고

#### 2. 제출서류 ※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

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

② 사업계획서

③ 단체소개서(정관 또는 회칙, 회원명단 등 증빙서류 포함)

▶ 심의를 위해 보탬e 신청과는 별도로 제출 필요

▶ 법인설립허가증(사본)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(사본)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

④ 기타 필요 서류

### IV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

모집공고	접수	선정심의	결과 통보
市 홈페이지.보탬e <16일간>	신청 자격 등 적격 여부 확인	심의위원회 2회 <자경위 자체 / 市 심의>	市 홈페이지.보탬e 및 개별 통지
1.5.(월)	1.5.(월)~1.20.(화)	1월 말 / 2월 중	2월 말

#### 1. 선정방법 : 서면 심사 및 심의위원회(2회)

가. (1차 심의) 선정심의위원회 사전 심사

- 심사대상 : 신청 접수한 기관·단체

※ 단일단체가 신청한 경우에도 심사 진행하되, 선정 공고에 부합되는  
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 제공모 절차 진행

- 심사일자 : '26. 1월 말 예정 (심사 일정 별도 통보)
- 심사방법 : 서면심사, 사업계획 발표(20분 이내) 및 질의응답
- 심사내용 : 사업이해도, 사업수행 능력, 단체 전문성 등 종합 검토
- 선정기준 : 기관별 산술평균 점수 중 **최고 득점 기관 선정**

(위원별 심사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)

※산술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

나. (2차 심의)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: '26. 2월 중

2. 결과통보 : 市 홈페이지·보탬e 공고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('26. 2월 말)

## V 지방보조금 지급, 사업 정산 및 평가

- 선정된 단체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
-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- 중간 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(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)
- 성과평가 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 심사 시 반영

## VI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, 보조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.
-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선정 취소,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.

- 세부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,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,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하며,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있음.
-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「지방보조금법」 제9조에 따른 '교부조건'을 통보하며, 보조사업자를 이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.
- 기타 문의사항 : 자치경찰관리과 여성청소년팀(☎051-888-2875)